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1
----------	------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이영실 의원 외 10명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3조)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5조~안 제6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안 제7조)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5조(실태조사)
제2조(정의)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시행규칙)
	부 칙

가.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1)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상충될 여지는 없으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겠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안 제5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근무환경·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기적인 현황파악 등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항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처우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노동환경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3 집행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집행부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필수 돌봄 노동자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건으로, 상위 법령 간 상충 등 별도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 강행규정으로 신설된 실태조사 수행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는 별도로 반대하는 조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 별도회신이 없었음.

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종합의견

- 현재 서울시에는 약 1만 9천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0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영실,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김화숙, 박기재, 이병도,
조상호, 홍성룡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101300000052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3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44,000천원으로 연평균 68,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5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비용은 서울시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사업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44,000천원

- 총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제5조 (실태조사비)	22,000	-	-	22,000	-	44,000
	제6조 (조사연구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제6조 (교육·훈련사업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 (b)	82,000	60,000	60,000	82,000	60,000	344,000
총비용 (b-a)		82,000	60,000	60,000	82,000	60,000	344,000

○ 실태조사비용 ≍ 44,000천원

$$= 22,000\text{천원} \times 2\text{회}$$

※2021년 노동공정상생담당관 감정노동자 인식실태조사비 22,000천원

○ 조사연구사업비용 ≍ 100,000천원

$$= 20,000\text{천원} \times 5\text{년}$$

※2021년 복지정책실 자활사업 조사,연구비 20,000천원

○ 교육·훈련사업비용 ≍ 200,000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5\text{년}$$

※2021년 복지정책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40,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계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